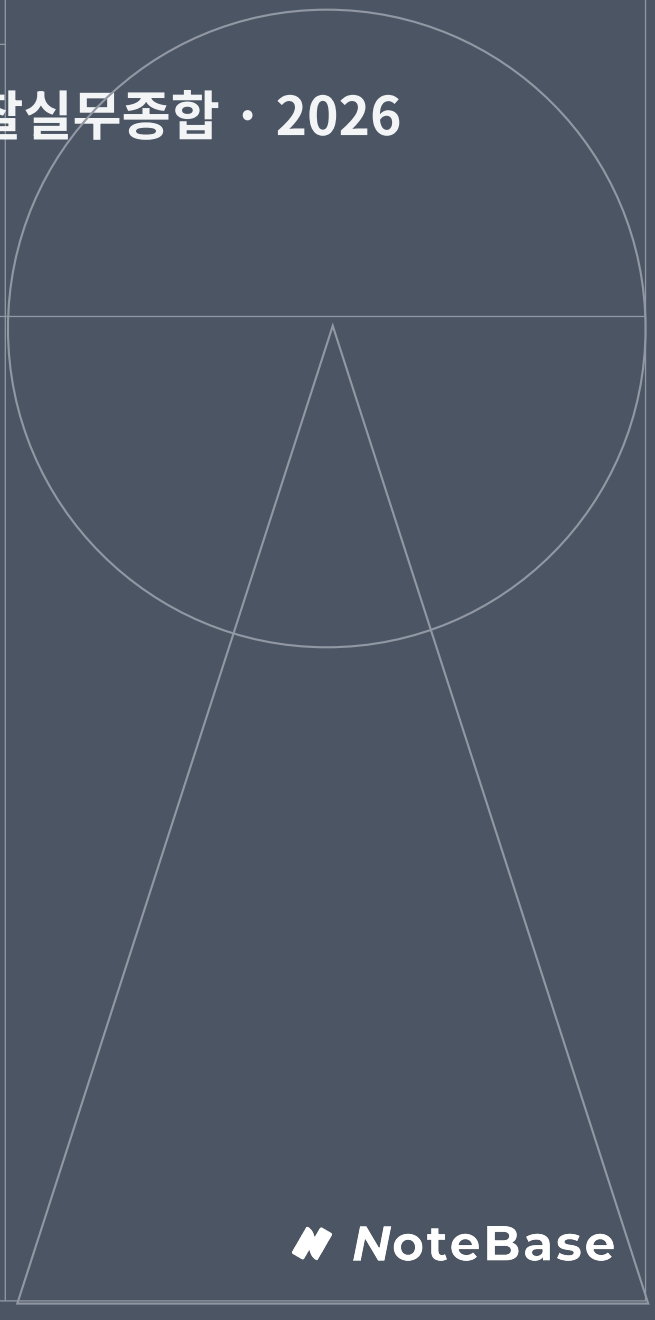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6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6

문 1.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비해 관료주의화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교통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이 이에 해당된다.
㉢ 행정경찰은 현재 또는 장래 사태에 대한 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일치한다.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평시경찰은 평온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며, 보안경찰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장래의 위해를 방지하는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국가경찰은 국가가 경찰의 조직·운영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므로 자치경찰보다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조직이 **관료주의화되어 지역주민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 X: 보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이다.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분야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하지만, 산림경찰과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 X: 행정경찰은 현재 또는 장래의 위해를 방지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진 작용을 뜻하므로 범죄수사와 같은 사법경찰작용도 포함한다. 따라서 행정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하지 않는다.

㉣ O: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을 언제 발동하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예방경찰은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는 작용이고,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범죄를 수사하는 작용이다.

㉤ O: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법규에 따라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하는 경찰활동이다. 비상경찰과는 위해의 정도, 적용되는 법규 및 담당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옳은 보기는 ㉠, ㉣, ㉤의 3개이므로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경찰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된다.

②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③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 추상적 위험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경찰은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하여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객관적 근거 없이 위험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는 **오상위험**이다. 추상적 위험은 특정 유형의 행위나 상태를 일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공의 안녕에는 **법질서의 불가침**이 포함된다. 공법규범은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규율하므로, 그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된다. 다만 실제 경찰권 행사는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과 한계를 따라야 한다.

② O: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하는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그 내용은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③ X: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위험이 있다고 잘못 추정한 것은 **오상위험**이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만으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추상적 위험은 경험칙에 따라 특정 유형의 행위나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객관적 근거 없는 위험의 오인과 구별된다.

④ O: 공공의 안녕은 국가나 공동체의 이익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법익**도 보호한다. 따라서 경찰의 보호 대상은 생명·신체에 한정되지 않고 사유재산적 가치와 무형의 권리에도 미친다. 다만 순수한 사법상 분쟁에서는 법원의 보호가 원칙이며, 이를 적시에 받을 수 없어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 보충적·잠정적으로 보호한다.

NoteBase

문 3. 갑오개혁 이후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경무사를 수장으로 하는 경무청이 신설되었다.

② 경부 경찰체제에서는 총순이 관찰사를 보좌케 하여 이원적 체제를 타파하였다.

③ 1896년 한성 부산 간 군용전신선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경부 경찰체제에서도 지방의 총순은 관찰사를 보좌하여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를 타파하였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1894년 갑오개혁 때 좌·우 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설치하고, 그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경무청관제직장'은 이러한 경찰기관의 조직과 직무를 정한 **최초의 경찰조직법**이다.

② X: 경부는 한성 및 개항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였지만, 그 밖의 지방 관찰부에서는 총순이 관찰사를 보좌하여 치안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지방경찰이 관찰사의 지휘체계에 남아 있었으므로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운영이 유지되었다**. 총순의 보좌로 이원적 체제를 타파했다는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 한다.

③ O: 1896년 일본은 **한성·부산 간 군용전신선 보호**를 명목으로 임시헌병대를 주둔시켰다. 이들은 전신선을 경비하면서 의병 진압에도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주둔은 일본이 한국의 통신과 치안에 개입하는 기반이 되었다.

④ O: 1894년 제정된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만든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다. 경찰의 임무, 총순과 순검의 근무 방법, 위경죄의 즉결 처리 등을 규정하여 경찰활동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NoteBase

문 4.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군정 초기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일제 강점기 경찰조직을 유지하였다.

② 1946년 1월 16일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에 의해 경무국이 경무부로 격상 운영되었다.

③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고 경제경찰,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④ 1945년에는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보안법을 폐지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치범처벌법·치안유지법·예비검속법 등은 1945년에 폐지되었지만,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보안법을 1945년 폐지 법령에 포함한 것이 오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정 초기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조직을 유지**하여 치안업무를 이어 갔다.

② O: 1946년 1월 16일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에 따라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하였다. 경무부는 총무·공안·수사·통신·교육의 5개 국으로 편성되어 중앙 경찰행정을 담당하였다.

③ O: 미군정은 경찰이 맡던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넘기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이는 경찰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사무와 통제기능의 일부를 이관하거나 없애는 **비경찰화**에 해당한다.

④ X: 1945년에는 군정법령 제11호에 따라 정치범처벌법·치안유지법·예비검속법 등을 폐지하였다. **보안법이 폐지된 때는 1948년**이며, 군정법령 제183호에 따라 1948년 4월 8일 폐지되었다. 따라서 보안법까지 1945년에 폐지하였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2번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1명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③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NoteBase

문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시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④ 제1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정답 3번

①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3급 이상 공무원·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 하나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외부 임용 자격에 해당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6.9.29>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자격자**는 외부 임용 자격에 해당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6.9.29>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NoteBase

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경력은 **법률학·경찰학 분야**여야 하며, **행정학 분야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6.9.29>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④

법정 자격요건에 열거된 경력의 **기간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도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임용 자격에 해당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6.9.2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NoteBase

문 7.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로 구분되며, 특수경과는 운전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로 구분된다.

②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으나, 신설할 수는 없다.

③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정답 4번

①

특수경과는 **항공경과와 정보통신경과**로 구분되며, 운전경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경과)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개정 1987.12.31, 1994.12.31, 2002.7.10, 2004.12.18, 2012.12.2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4.1.16>
4. 특수경과
가. 삭제 <2016.12.30>
나. 삭제 <2016.12.30>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경과의 일부를 폐지·병합하거나 **신설할 수도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경과)
④경찰청장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7.10.17, 2020.6.23>

NoteBase

③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할 수 있는 정원감축 등의 사유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 · 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 · 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3.11, 1994.12.31, 2002.7.11, 2004.12.18, 2016.12.30, 2024.1.16>

④

신규채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안보수사·항공·정보통신 분야로 채용된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24.1.16>

NoteBase

문 8. 「경찰공무원법」상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다음 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②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하면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법 제15조의2(전사 · 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②

근속승진자가 근무하는 기간에는 **승진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승진대상자 명부는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15조(승진)
③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승진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자** 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에는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15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9.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③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4번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경찰법의 법원이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를 말한다.

③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근거로 제정하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NoteBase

④

조례 제정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NoteBase

문 10.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포함한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처분의 재심사의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재심사의 신청은 당사자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정답 1번

①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서는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다.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가 해당 처분 절차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NoteBase

③

재심사는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NoteBase

문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정답 2번

①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이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에서만 행사하고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에 보호의 필요성도 개별 경찰관의 주관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②

적당한 보호자가 없어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병자·부상자라도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이 유형의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oteBase

③

주취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그 발동·행사 요건은 불가피한 최소한도에서만 행사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④

긴급구호 요청 규정은 응급환자의 치료를 국가의 사무로 정하거나 국가에 치료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치료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가와 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이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제2항),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의 치료가 국가의 사무라거나 국가가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의 구호에 필요한 치료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72 판결)

문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 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②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③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 기록이 필요한 경우

④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범죄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답 3번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고,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이며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②

기록대상자로부터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NoteBase

③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현장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단순히 **현장 기록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 기록이 필요한 경우. 다만,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경찰관의 불법어획물 방류명령이 이루어지는 현장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 시위 현장
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검사하는 현장
마. 「해양경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④

대테러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범죄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범죄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 ·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NoteBase

문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한다.
㉣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NoteBase

ㄴ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ㄷ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신설 2025.4.29>

ㄹ

같은 청구 원인으로 이미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받았다면 다시 한 청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한다.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⑥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2025.4.29>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oteBase

문 14. 경찰 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원리란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② 단순반복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통솔범위가 좁지만,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통솔범위가 넓다.

③ 계층제 원리는 조직 경직화를 초래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새로운 기술·지식 등 도입이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④ 무니(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중시하여 조정을 목표달성과 직결되는 조직의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업무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보면 단순반복업무는 **통솔범위가 넓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는 **통솔범위가 좁다**. 전문적 업무일수록 개별적인 지도·조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분업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업무를 성질과 종류에 따라 나누고, 담당자에게 **동질적인 업무를 전담**시키는 원리이다. 같은 업무를 반복하여 숙련과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② X: 통솔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뜻한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단순반복업무는 처리 방식이 정형화되어 감독 부담이 작으므로 **통솔범위가 넓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는 개별적인 지도와 조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통솔범위가 좁다**. 선지는 이 관계를 반대로 설명했다.

③ O: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위를 상하로 나누고 명령·복종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이다. 상급자의 지시와 기존 절차를 중시하는 구조가 경직되면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소극적이 될 수 있다.

④ O: 조정은 나뉜 업무와 구성원의 활동을 **공동목표 달성을 향해 통일**하는 원리이다. 무니(Mooney)는 분업된 활동이 하나의 목표에 기여하도록 결합하는 조정을 조직의 제1원리로 보았다.

NoteBase

문 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다음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번

①

지시문서는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이며,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지시문서: 훈령 · 지시 · 예규 ·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②

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재할 때 성립**한다. 서명에는
전자이미지서명·전자문자서명·행정전자서명도 포함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NoteBase

③

문서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고문서는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기산점은 그 다음 날이 아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NoteBase

문 16.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절차, 신고절차, 입법예고절차, 행정조사절차 등을 규율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정답 1번

①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규율하지만, **행정조사절차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는 **송달받을 자의 동의와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의 지정**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NoteBase

④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NoteBase

문 17.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으면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경찰 감찰 규칙 제12조(감찰활동의 관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감찰활동 결과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하면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지는 보고 대상을 감찰부서장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경찰 감찰 규칙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 · 관행, 선행 · 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우면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 감찰 규칙 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oteBase

④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수사결과 통보 시까지 감찰조사·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절차 중지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경찰 감찰 규칙 ② 감찰관은 검찰 ·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NoteBase

문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 원이다.

④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3번

①

국가·지방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공직자등에 포함**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는 **직무 관련성과 명목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③

각급 학교의 장·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은 **강의 등은 1시간당 100만 원, 기고는 1건당 100만 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등: 100만원
1)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2. 적용기준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 액으로 한다.

④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NoteBase

문 19.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경찰사에서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경찰서비스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순으로 제정되었다.

②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최소주의는 윤리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고 더 이상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③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에 경찰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1번

①

제정 순서는 **경찰윤리헌장(1966년) → 새경찰신조(1980년) → 경찰헌장(1991년) → 경찰서비스헌장(1998년)**이다. 경찰서비스헌장은 네 강령 중 가장 나중에 제정되었다.

②

최소주의는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수준만 지키면 충분하다고 여겨 그 이상의 헌신이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

③

경찰헌장의 해당 문구에서 화합·단결은 조직 내 협력을, 규율 준수는 기강을, 검소한 생활은 청렴한 생활 태도를 강조한다. **조직생활의 기강과 개인 생활의 청렴성을 함께 지향**한다는 점에서 ‘깨끗한 경찰’이라는 목표에 연결된다.

④

기관별 행동강령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제정한다. 경찰청은 이를 **경찰청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NoteBase

문 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대상에는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가 포함된다.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1번

①

신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 · 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직무관련자와의 신고 대상 거래를 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가 모두 포함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 · 경매 · 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 경매 ·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 중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사적 접촉은 신고 의무가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eBase

문 21. 사회학적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머튼(Merton)의 긴장이론은 하위계층의 목표달성 좌절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고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②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이론은 좋은 자아관념이 범죄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가담치 않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③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이라는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게 되면 범죄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코헨(Cohen)의 하위문화이론은 범죄를 중류계층에 대한 반항이 아닌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코헨은 하위계층 청소년의 지위 좌절이 **중류계층의 가치에 대한 반동형성**으로 이어져 비행 하위문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위계층 자체의 가치와 규범을 따르는 데서 비행을 설명하는 것은 밀러의 관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머튼의 긴장이론은 사회가 강조하는 성공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다. 하위계층은 성공을 요구받으면서도 교육·직업 등의 기회가 제한되므로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로 긴장을 겪는다. 이때 성공 목표는 받아들이되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는 적응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

② O: 레클리스의 견제이론은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이나 유혹이 있어도 개인의 내적·외적 견제가 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좋은 자아관념은 자신을 규범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내적 견제 요소**이므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도 비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작용한다.

③ O: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개인을 사회에 연결하는 **애착·참여·전념·신념**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본다. 애착은 부모·교사 등과의 정서적 유대, 참여는 건전한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 전념은 학업·직업 등 관습적 목표를 위해 쌓아 온 노력과 투자, 신념은 법과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유대가 약해지면 범죄를 억제하는 힘도 약해진다.

④ X: 코헨은 하위계층 청소년이 중류계층의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지위 좌절을 겪고, 그에 대한 **반동형성으로 중류계층의 가치와 규범을 거부**하면서 비행 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류계층에 대한 반항이 아닌'이라는 설명은 코헨의 주장과 다르다. 중류계층에 대한 반항보다 하위계층 자체의 가치와 규범에 따르는 과정에서 비행이 나타난다고 보는 설명은 밀러의 하위계층문화이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2. 범죄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 입장에서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이라 주장한다.

②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발생 3요소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자) 부재를 들고 있다.

③ 집합효율성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④ 방어공간이론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범죄의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행동을 선택한다는 **자유의지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결정론적 인간관'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으며, 체포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한다는 설명은 이론의 취지에 맞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의 예상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범죄 실행 여부를 선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결정론적 인간관'을 '자유의지적 인간관'으로 고쳐야 한다. 체포될 위험과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면 범죄자가 예상하는 비용이 증가하므로 범죄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② O: 일상활동이론은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유능한 보호자 부재**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결합할 때 범죄기회가 생긴다고 본다.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이 범행하기 적합한 대상을 만나더라도 이를 감시하고 제지할 보호자가 있으면 범죄기회가 줄어든다.

③ O: 집합효율성이론은 주민 사이의 신뢰와 유대에 바탕을 둔 **공동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와 비공식적 통제**를 중시한다. 주민들이 범죄나 무질서를 남의 일로 방치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고 참여할수록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능력이 높아진다고 본다.

④ O: 방어공간이론은 주민의 **영역의식과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기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주민이 생활공간을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관찰·관리하면 수상한 행동이나 침입을 알아차리고 대응하기 쉬워진다. 공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주변을 잘 볼 수 있게 설계하는 것도 이러한 주민의 감시와 관리를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23. 「유실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③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유실물법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서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1.7>

③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유실물법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NoteBase

④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NoteBase

문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자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④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정답 3번

①

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은 **미수범도 처벌**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 강요)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 · 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025.12.30>
2.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NoteBase

④

채무를 이용해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강요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teBase

문 25.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각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③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정답 1번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해야 한다.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한 사건을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고소 · 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 · 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① 고소 · 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 · 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하면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22조(고소인 · 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 · 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NoteBase

④

고소·고발사건은 원칙적으로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그 기간에 완료하지 못하면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 · 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 ·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NoteBase

문 26.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1, 2, 4번

NoteBase

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반적인 실시 주체는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다.
수사처검사등은 수사처검사·특별검사·특별검사보·군검사를 뜻하므로, 일반 검사까지 실시 주체에 포함한 부분이 잘못이다. 검사가 수사 중인 경과조치 대상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처검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이하 "수사처검사등"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통신비밀보호법 부칙(2026. 9. 29. 법률 제21989호) 제2조
제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군검사의 지휘를 받는 원칙과 급속한 경우의 사후 승인 예외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③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군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9.29>

NoteBase

③

긴급통신제한조치는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경과조치에 따라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 서면·대장 요건은 적용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④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통신비밀보호법 부칙(2026. 9. 29. 법률 제21989호) 제2조
제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한은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이다. 이 기한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조치를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하므로, 48시간이라는 부분이 잘못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⑤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6.9.29>

NoteBase

문 27.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청색으로 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홍색으로 한다.

③ 보통 장물수배서는 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백색으로 한다.

④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백색으로 한다.

정답 3번

①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발급하며, 색상은 **홍색**이다. 청색은 중요 장물수배서의 색상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9조(장물수배서)
①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NoteBase

②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 중인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는 **중요 장물수배서**를 발급하며, 색상은 **청색**이다.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발급하고 홍색으로 구분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9조(장물수배서)
①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③

보통 장물수배서는 특별 중요·중요 장물수배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건**에 발급하며, 색상은 **백색**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9조(장물수배서)
①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3. 보통 장물수배서(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④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 중인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발급하며, 색상은 **청색**이다.
백색은 보통 장물수배서의 색상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9조(장물수배서)
①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28.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해야 한다.

④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정답 3번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 유치와 유치장 관리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그 책임을 진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 · 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과 19세 미만**, 신체장애인 및 사건 관련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 유치**한다. 신체장애인에게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해야 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생명·신체의 위해 방지와 유치장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체·의류·휴대품·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선지는 이러한 요건부 권한을 일률적인 검사 의무로 바꾸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NoteBase

④

동시에 **3명 이상**을 입감시키는 경우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 · 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NoteBase

문 29.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 경비과장은 감사,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반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③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경찰청 경비과장이 감사·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⑤ 경찰청 경비과장은 감사,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면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②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③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8조(채증의 제한)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NoteBase

④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동영상 촬영담당·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②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NoteBase

문 30. 「통합방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방호”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

국가중요시설은 적의 점령·파괴 또는 기능 마비 시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며, 공공기관·공항·항만·주요 산업시설 등이 이에 포함된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12.22, 2024.1.16>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 ·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NoteBase

ㄴ

선지는 **병종사태**의 정의이다. 을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로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아래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사태**이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12.22, 2024.1.16>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 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 ·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 · 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ㄷ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다. 선지는 그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 · 보안 및 방호)
② 시 · 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ㄹ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통합방위법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14.11.19, 2017.7.26>
2.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NoteBase

ⓞ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은 **통합방위**이다. 방호는 적의 도발·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이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12.22, 2024.1.16>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 ·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 · 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NoteBase

문 31.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은 시·도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공관지역”이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B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지정등’에는 신규지정이 포함되며, 테러취약시설의 지정 주체는 **경찰청장**이다.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건축물 등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중요시설
나. 다중이용건축물등
다. 공관지역
라. 미군 관련 시설
마. 그 밖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14조의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결정한 시설
8. "지정등"이란 신규지정, 등급변경, 지정해제를 말한다.

②

공관지역은 **소유자와 관계없이** 공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건물의 일부·부속토지를 말하며, **공관장의 주거도 포함**한다.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4. "공관지역"이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NoteBase

③

B급은 테러로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때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2. B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④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② 시 · 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2. 도로교통 관련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③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NoteBase

②

승차정원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2명**이다. 이를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https://drive.google.com/file/d/1bw19xqvjX1vfG-i6ZZSvXwYNHkcxmWuC/view?usp=drivesdk

③

어린이·노인·법정 신체장애인의 보도 통행 특례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전기자전거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oteBase

④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포함되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장치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NoteBase

문 33.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한다.

③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 결과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온 직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만취한 채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를 요구하면 음주측정 직무에 착수한 것**이다. 실제 호흡측정을 시작해야만 직무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3.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93 판결)

NoteBase

②

거듭된 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숨을 부는 시늉만 하여 측정수치가 나오지 않게 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음주측정불응**이다. 형식적으로 측정에 응하였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③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 요구는 호흡측정 결과의 확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낸 뒤에야 채혈을 요구하였다면 정당한 요구가 아니므로, **채혈하지 않았어도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수사기록에 붙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NoteBase

④

보호조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해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한 측정 요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3.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439에 있는 맥도널드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공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뒤 일산경찰서 탄현지구대로 데려왔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인 2009. 11. 3. 00:47부터 같은 날 01:09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다거나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이 탄현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NoteBase

문 34. 「도로교통법」상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②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③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④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정답 1번

①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금지 장소**이다. 이 사유만으로 **정차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②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③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NoteBase

④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NoteBase

문 35.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지만,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시민사회 단체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려고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생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작성 · 배포하는 행위

②

정보 수집 시에는 신분과 수집 목적을 밝혀야 한다. 다만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① 경찰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NoteBase

③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상시 출입은 금지**되며,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 언론 · 교육 · 종교 ·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④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의 사용은 금지된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신분 고지와 정보 수집·사실 확인 목적의 설명 절차**이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NoteBase

문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철회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최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철회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제6조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으며,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4번

①

신고한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주최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중복 집회·시위로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가 있으면 **그 주최자에게 철회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NoteBase

③

철회 사실을 통지받은 주최자는 **최초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금지 통고 등으로 개최 시기를 놓쳤다면 일시를 새로 정하여 **시작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최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한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지의 '벌금'은 제재의 종류를 잘못 제시한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oteBase

문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전 금지된 집회라면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다.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도 금지한다.

③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 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①

사전 금지된 집회라도 실제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금지통고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한 처벌과는 구별된다.

위와 같이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 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NoteBase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준비와 참가, 집회장소 접근까지 보호**하므로, 검문을 이용해 시간을 지연시키며 집회장소 접근을 방해하는 국가행위도 금지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 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 여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3 전원재판부)

③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거주지·체류지의 선택과 변경**을 보호한다. 서울광장은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가 아니고 그곳의 통행도 일시적인 이동이므로, 통행 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침해한다.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서울광장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자유는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지정재판부)

NoteBase

④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공동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려는 목적의 모임**이어야 한다. 교회에 잠시 머문 행위는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곳에서 의사를 표명하는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소재 평화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주한미군확장이전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가 사전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사전봉쇄되고 새로운 집회장소로 고지받은 같은 읍 본정리 소재 농협 앞으로의 진입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같은 리 소재 신정감리교회에 잠시 머물게 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신정감리교회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의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단지 피고인들은 원래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법률에 의한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집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NoteBase

문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은 **반드시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NoteBase

④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의 신고 상대방은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이다. 선지는 통일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9.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하지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재입국허가를 받거나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면 사증이 면제**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②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NoteBase

③

입국심사 시 생체정보 제공과 본인확인이 원칙이지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은 면제**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④

입국심사에 필요한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다. 선지는 요청 주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NoteBase

문 40.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서 발부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범죄관련인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부

②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실종자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부

③ 오렌지색수배서(Orange Notice) – 위험물질 경고를 목적으로 발부

④ 보라색수배서(Purple Notice) – 범죄수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흑색수배서는 **신원불명 변사체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다.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배서는 **황색수배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청색수배서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람의 **신원·소재·활동에 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발부된다. 따라서 범죄관련인의 소재를 확인한다는 설명은 청색수배서의 목적에 해당한다.

② X: 흑색수배서는 **신원불명 변사체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발부된다. 실종자의 소재 확인은 황색수배서(Yellow Notice)의 목적이므로, 흑색수배서와 황색수배서를 혼동한 설명이다.

③ O: 오렌지색수배서는 위험물질을 비롯한 물건이나 사건 등이 **공공안전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부된다. 위험물질 경고는 이러한 목적에 포함된다.

④ O: 보라색수배서는 범죄자가 사용하는 **범죄수법·도구·장치·은닉방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발부된다. 따라서 범죄수법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보라색수배서의 목적에 해당한다.

NoteBase